



제297회 임시회
2011. 1. 24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,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
 - “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
→ “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”
- 자활기금의 용도 지정(안 제3조)
- 자활자금 융자대여 한도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(안 제8조제1항)
-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(안 제14조)
-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삭제(제2조, 제10조, 제13조)
-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동기 및 필요성

- 동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'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의거 현실에 부합 하도록 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조례 제명 변경 부분은 근거법령 개정(2006.12.28)에 의거 제명을 변경하는 것임
 - 충청북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→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로 변경
- 자활기금 융자대여 한도액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
 - 자활기금 융자대여 한도액이 현행 7천만원 →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보건복지부 2010년 자활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의 규모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음.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관련하여
 - 기금의 관리 · 운용의 심의 기능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충청북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 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업무의 기능상, 성격상 적합 여부
- 기금의 존속기한(2020년 12월 31일) 명시와 관련하여
 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존속기한을 5년이내에 정하도록 되어있으나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이 5년 이상 소요될 경우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
- 그러나,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 조항(제2조)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
다. 검토의견

- 따라서,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기금의 존속기한이 법령에 의해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이 5년 이상 소요 시에는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 규정하고는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조성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존속기한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